

◆ KOEMA 消息 ◆

1996年度 始務式 舉行

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1月5日 진홍회 회의실에서 전 임·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996년도 시무식을 가졌다.

이날 시무식에서 李喜鍾회장은 훈시를 통해 지난 한해는 「중전기기 산업발전 기금」조성 및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등 중전업계의 기술수준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, 명실공히 전기업계 대변단체로서의 자리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도 제 2회 「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」 개최등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대내외 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인 만큼 가일충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.

특히, 금년은 지난 6년간 전 임·직원이 애쓰고 부단히 노력한 밑거름을 통해 제2의 도약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 분발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위상을 강화하고 업계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.

중고 전기기기 수입요령 공고

- 한국전기공업진홍회는 통상산업부 수출입 별도 개정고시 제 1995-126호('95. 12. 29)에 따른 중고 전기기기 수입품 추천요령을 제 1996-1호('96. 1. 4)로 다음과 같이 공고 함.
- 동 제도는 그동안 POSITIVE SYSTEM 으로 중고 전기기기 수입시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추천을 해 주고 있었으나, 금번 동제도가 NEGATIVE SYSTEM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고 전기기기중 전기식 노화 오븐, 전기용접기 품목에 대해서만 국내전압에 대한 적합성, 기계 안전성, 환경오염 발생 유무만 확인후 수입 추천키로 변경됨.
- 동 제도에 자세한 내용은 진홍회 국제과(TEL : 424-4901)로 문의 바람.

중고전기기기 수입추천 요령

한국전기공업진흥회

공고 제 1996-1호

수출입별도 공고 개정고시 제 1995-123호('95. 12. 29)에 따른 중고 전기기기 수입품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96년 1월 4일

한국전기공업진흥회

☞ 다 음 ☞

제 1 조(목적) 이 요령은 수출입 별도공고 제1-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전기공업진흥회(이하 “진흥회”라 한다)에 위임된 중고 전기류 수입추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추천대상) 수출입 별도공고 제1-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전기기기류<별첨2>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한다.

제 3 조(수입제한) 수입코자 하는 물품의 신품이 수입선다변화 품목 공고에 의한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한 입초국(원산지, 선적지 기준)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다.

제 4 조(추천신청) 제2조 규정에 의한 중고 전기기기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<별표1>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추천기준) 추천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실수요자가 제조업체일 경우
- (2)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
- (3) 국내 전압 및 규격등에 적합할 경우
- (4)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
- (5)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

제 6 조(처리기간 및 장소)

- (1) 추천서는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다.
- (2)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(3) 추천처리 장소는 한국전기공업진흥회(서울 송파구 송파동 29 부영빌딩)에서 한다.
- (4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.
 - 가) 외국기관 및 해외공관과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
 - 나)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
 - 다)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
 - 라) 공휴일

제 7 조(추천서의 유효기간)

- (1)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 부터 30일로 한다.
- (2)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<별표1>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.

제 8 조(변경신청) 본회가 수입추천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<별표1>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이의신청) 본회가 추천한 수입추천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단, 이의신청은 추천서 반려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<별표1>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실적보고) 수입추천 실적은 익월 10일 이내에 소정 양식에 의거 통상산업부에 보고 한다.

제 11 조(기타)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제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요령은 199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이전의 수출입별도 공고 제1장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또는 승인 받는 품목은 이 개정요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또는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.

〈별 표1〉

구비서류

1. 중고 전기기기류 수입추천 신청

- 가) 수입승인신청서 6부(임대차 중고기기류 수입추천 신청 수입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
별지서식 3-3호)
- 나)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확약서 1부(무상기증의 경우 당해 사실 입증서류)
- 다)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- 라) 수입대행계약서 1부(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.) 마) 리스계약서 1부(리스자금
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)
- 바) 카탈로그 또는 기타 증빙서류
- 사) 수출입별도 공고 제1-3조 제2항 제4호의 수입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2. 재신청

- (1) 유효기간 연장
 - 가) 수입승인 신청서 6부
 - 나)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확약서 1부
 - 다) 사유서 1부
 - 라) 기 발급받은 추천서류
- (2) 변경신청
 - 가) 수입승인 신청서 6부
 - 나) 사유서 1부
 - 다)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
 - 라) 기 발급받은 추천서류

3. 이의신청

- 가) 수입승인 신청서 6부
- 나) 이의신청서 1부
- 다) 사유서 1부

〈별 표2〉

추 천 대 상 품 목

제 1-3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기류 및 산업설비

1. HS 제85류 전기로 및 전기용접기의 것

품목번호(HS 번호)	품 목
8514. 10	저항가열식의 노와오븐
8514. 20	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오븐
8515. 2	금속의 저항용접용기기
8515. 21	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
8515. 3	금속의 아크 또는 플라즈마 아크용접기
8515. 31	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

2. 기계류, 부품, 소재 국산개발 대상품목 또는 공업기반기술 개발대상품목중 개발을 위한 견본